

[별표 1의2] 단위변경신청서 작성요령

I 개요

-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의 규격별 물량 단위가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려는 물량 단위와 상이한 경우,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단위로 물량을 환산하기 위한 신청서

II 작성방법

- 수입원재료 증빙자료를 환급등 최초 사용전에 규격별 물량의 단위를 환급등 신청에 사용할 단위로 변경 신청
 - ☞ 예: 페인트를 ‘드럼’ 단위로 수입하였으나 제조에는 ‘리터’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등에 사용되기 전에 단위변환신청하는 것이 가능. 그러나, 이미 원재료로 신청되었다면 단위변환 신청할 수 없음
- 부산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
- 숫자기재 방법: 물량을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,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재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1. 신청내역

- 1-①~1-②. **제출번호 및 제출일자:**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
[제출번호: 신고인부호(5)-연도(2)-일련번호(6)]
- 1-③. **관세사 :**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

2. 신청인

- 2-①~2-⑤ **신청인:** 단위변경신청인(환급 또는 제증명 신청권자)의 상호·성명·사업자번호·통관고유부호·연락처를 기재

3. 단위 환산 내역

- 3-㉠. **연번:** 행 일련번호
- 3-㉡. **신고서 구분:** 원재료 증빙자료 구분

원재료구분 부호	증빙 서류
00	수입신고필증
02	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
03	평균세액증명서
04	분할증명서
05	부산물

- 3-㉢~㉤. **신고번호(접수번호) 란 규격:** 단위 변경을 하려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의 발급번호를 기재
 - **신고번호:** 원재료별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
 - **란번호:**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,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‘001’로 기재
 - **규격번호:**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,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’(을) 또는 ‘증명물품’(을) ㉠연번을 기재
- 3-㉥. **변경전 수량 단위:** 변경 전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상의 규격번호별 수량과 단위를 기재
- 3-㉦. **변경후 수량 단위:**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 시 사용하려는 규격단위와 환산 물량을 기재